

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25] <신설 2020. 6. 4.>

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(제72조의2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,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라.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1)부터 4)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5년 이상 검사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법조문	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	법 제80조 제5항제1호	위탁 취소			
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3항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	법 제80조 제5항제2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위탁 취소	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80조 제5항제3호	업무개선 명령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위탁 취소
라. 제7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	법 제80조	업무개선	업무	업무	위탁

분에 따른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제5항제4호	명령	정지 1개월	정지 3개월	취소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	----	-----------	-----------	----